

2016. 10. 6.

2016년도
행정사무감사계획안



행정문화위원회

목 차

1. 감사의 목적
2. 감사기간
3. 감사 대상기관
4. 감사위원회 편성
5. 감사일정 및 장소
6. 주요 감사사항
7. 감사보고·서류제출 및 출석요구
8. 감사요령
9. 감사보고서 작성
10. 기타사항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

1. 감사의 목적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까지와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,
- 자치입법·예산·정책 등 의안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,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·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2. 감사기간

- 2016. 11. 9(수) ~ 2016. 11. 22(화), 14일간

3. 감사 대상기관

위 원 회 선 정 기 관 (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1~2호)	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(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5~6호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공보관• 감사관• 행정국(북부·남부출장소 포함)• 문화체육관광국 (청남대관리사업소 포함)• 자치연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(재)충북문화재단•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• 충청북도체육회•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

4. 감사위원회 편성

가. 감사반 :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6명

직위	위원회 직위	
감사반장	위원장	김학철
감사위원	부위원장	연철흠
"	위원	박봉순
"	"	박한범
"	"	이언구
"	"	최병윤

나. 감사사무보조 : 행정수석전문위원, 전문위원, 주무관 5명

직위	직급	성명	비고
수석전문위원	지방서기관	손윤목	
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	김보흠	
주무관	지방행정 나급	이제완	
주무관	지방행정주사	최정섭	
주무관	지방행정주사보	김은영	
속기사	미정	2명	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감사일자	대상기관	감사장소
11. 9.(수)	10:00 감사관	위원회 회의실
	14:00 공보관	"
11. 10.(목)	10:00 행정국 : 총무과, 정보통신과 남부출장소, 북부출장소	"
11. 11.(금)	10:00 행정국 : 자치행정과, 청년지원과, 세정과, 회계과	"
11. 12.(토) ~11.13(일)	- 감사 세부사항 준비	"
11. 14.(월)	10:00 문화체육관광국 : 문화예술산업과, 관광항공과, 청남대관리사업소	"
11. 15(화)	10:00 문화체육관광국 : 체육진흥과, 건축문화과, 충청북도 2개 체육회 (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포함)	"
11. 16.(수)	10:00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	"
	14:00 (재)충북문화재단	"
11. 17.(목)	10:00 자치연수원	자치연수원
	14:00 주요사업 현장방문	청주공항
11. 18.(금)	- 주요사업 현장방문	속리산 법주사
11. 21(월)	- 주요사업 현장방문	청남대 남부출장소
11. 22.(화)	10: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	위원회 위원실 등

6. 주요 감사사항

- 가.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및 특수시책 사업 추진사항
- 나.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행사항
- 다. 업무계획,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
- 라. 위법·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,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
- 마. 법령, 조례 등 관련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
- 바.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·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
- 사.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아.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7. 감사대상기관의 서류 제출 및 관계인 출석 요구

- 가.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 요구

1) 제출기한 : 2016. 10. 31(월)까지

2) 제출부수 : 총 30부

3) 요구방법

○ 감사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및
감사위원이 추가 요구한 자료로 함.

※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 : 별도자료

○ 본 계획서에 명시된 서류와 자료 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,
감사위원은 감사실시 5일전까지 자료요구 목록을 위원장에게
제출하고,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4일전까지 서면으로
요구하며, 수감기관은 감사개시일로부터 3일전까지 제출함.

2) 감사대상 기관의 증인 · 참고인 출석 요구

- 가) 피감사 관계공무원의 출석 · 증언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장에게 요구함.
- 나)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· 증언 요구는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함.

※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: 별도자료

8. 감사요령

가. 감사방법

- 감사는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, 자료제출 요구, 질의 · 답변,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함.

나. 감사 진행순서

- 1) 감사실시 선언
- 2) 위원장 인사
- 3) 증인선서
- 4) 업무현황보고 청취
 - 가) 기관 · 부서장 인사 및 간부소개
 - 나) 현황보고
- 5) 감사실시(질의 · 답변)
- 6) 감사종료 인사(강평)
- 7) 감사종료 선언

다. 선서요령

- 선서는 피감사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함.
- 피 감사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, 기타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제출토록 함.
-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(감사반장)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함.
- 위원장(감사반장)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함.

9. 감사보고서 작성

- 가. 행정사무결과보고서(안)은 위원장 및 전체 위원이 협의하여 작성함.
- 나.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, 건의사항,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.
- 다. 감사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·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음.

10. 기타사항

- 본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함.